

공증수수료 안내

(2010. 2. 7. 기준)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가액(쌍무기준)	수수료	가액(편무기준)	수수료
200만원	22,000	200만원	11,000
500만원	33,000	500만원	22,000
1,000만원	51,500	1,000만원	33,000
1,500만원	66,500	1,500만원	44,000
2,000만원	81,500	2,000만원	51,500
3,000만원	111,500	3,000만원	66,500
4,000만원	141,500	4,000만원	81,500
5,000만원	171,500	5,000만원	96,500
6,000만원	201,500	6,000만원	111,500
7,000만원	231,500	7,000만원	126,500
8,000만원	261,500	8,000만원	141,500
9,000만원	291,500	9,000만원	156,500
1억원	321,500	1억원	171,500
1억5,000만원	471,500	2억원	321,500
2억원	621,500	3억원	471,500
2억5,000만원	771,500	4억원	621,500
3억원	921,500	5억원	771,500
3억5,000만원	1,071,500	6억원	921,500
4억원	1,221,500	7억원	1,071,500
4억5,000만원	1,371,500	8억원	1,221,500
5억원	1,521,500	9억원	1,371,500
6억원	1,821,500	10억원	1,521,500
7억원	2,121,500	13억원	1,971,500
8억원	2,421,500	15억원	2,271,500
9억원	2,721,500	18억원	2,721,500
10억원 이상	3,000,000	20억원 이상	3,000,000

- ① 위 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편무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급부가액이 바로 목적가액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의 합계가 목적가액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방당사자의 급부가액의 배액이 목적가액이 됨.
- ② 목적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수료는 그 초과한 금액에 2,0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44,000원을 더한 금액임(단, 상한 300만원).
- ③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100원으로 산정.
- ④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액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 ⑤ 승인, 허가 또는 동의, 계약의 해제, 유언의 취소,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변경 등의 증서작성 수수료나 채무소멸에 따른 부기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가액(쌍무기준)	수수료	가액(편무기준)	수수료
2,000만원	40,750	2,000만원	25,750
3,000만원	55,750	3,000만원	33,250
3,500만원	63,250	4,000만원	40,750
4,000만원	70,750	5,000만원	48,250
4,500만원	78,250	6,000만원	55,750
5,000만원	85,750	7,000만원	63,250
6,000만원	100,750	8,000만원	70,750
7,000만원	115,750	9,000만원	78,250
8,000만원	130,750	1억원	85,750
9,000만원	145,750	1억5,000만원	123,250
1억원	160,750	2억원	160,750
1억5,000만원	235,750	3억원	235,750
2억원	310,750	4억원	310,750
2억5,000만원	385,750	5억원	385,750
3억원	460,750	6억원	460,750
3억2,650만원 이상	500,000	6억5,300만원 이상	500,000

- ① 위 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단, 상한 50만원).
- ②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 ①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2 (단, 상한 100만원)
- ③ 선서 인증의 수수료
——— ①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1.5 (단, 상한 75만원)

※ 기타 인증의 수수료

- 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설립시 정관 인증
발행주식 액면총액 5,000만원까지 ——— 8만원
5,000만원 초과시 — 8만원+[(주식총액-5,000만원)×(1/2,000)]
(단, 상한 100만원)
- ② 확인서 및 진술서의 인증 ——— 12,500원
- ③ 초청장의 인증(피초청인 수 기준)
5인 이하인 경우 ——— 12,500원
5인 초과시 ——— 초과 1인마다 1,000원 가산
단, 영문인 경우 ——— 위 수수료×2
- ④ 위임장의 인증 ——— 3,000원
- ⑤ 법인의사록의 인증 ——— 30,000원
- ⑥ 한글 번역 인증 ——— 12,500원
외국문 번역 인증 ——— 25,000원

※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

- ① 확정일자 압날 수수료 ——— 1,000원
- ② 집행문 부여 수수료 ——— 10,000원
- ③ 인지 첩부의 경우 ——— 인지대
- ④ 통지를 요하는 경우 ——— 우편요금
- ⑤ 공정증서 정보 등 송달의 경우 ——— 우편요금+4,000원